

계룡시조례 제 호

계룡시고문변호사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계룡시 고문변호사(이하 “고문변호사”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위촉)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3인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 (고문사항)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
1.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2. 각종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
3. 기타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

제4조 (위촉기간)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해촉) 고문변호사가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자문사항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 할 때에는 그 임기내라 하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.

제6조 (사건 실적부 비치)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건실적부(별지서식)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

제7조 (합의 및 통보)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하고자 하는 각 부서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, 그 회신내용에 대해서도 법제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 (수당) ①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,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 다만,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